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66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 송석준 · 김선교 · 조경태

이종배 • 유상범 • 박대출

곽규택 • 강대식 • 김예지

윤한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교육감선거에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거비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각각 선출되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리된 집행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바,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 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9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지명 등) ① 시·도지사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명을 교 육감후보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때에 제1항에 따라 지명한 사람(이하 "교육감후보자"라 한다)에 관한 제4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교육감후보자 지명서 및 본인승 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의 제출, 전과기록의 조회, 전과기록의 회보 등에 대하여는 제49조제10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④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 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에 관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는 제1항에 따른 지명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후보자가 사퇴·사망한 경우에는 교육감후보자의 지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교육감 후보자의 지명절차는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교육감후보자지명에 관한 각종 서류의 서식과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후보자등록 후에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지명한 교육감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
 - 2.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때

- 3.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제5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와 교육감후보자가 사퇴·사망하여 새로운 교육감후보자로 지명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후보자로 지명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 제목 중 "申告"를 "신고 등"으로 하고,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 자를 통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제55조 중 "候補者가"를 "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가"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을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교육감후보자의 성명·경력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중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또는 교육감후보자의 성명·경력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력등에"를 "경력이나 교육감후

보자의 성명ㆍ경력에"로 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후보자의 사 진·성명과 제8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제3항·제5항"으로 한다.

제219조제2항 중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52조제1항·제3항"을 "제52조제1항·제3항·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교육감후보 지명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지 사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9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지명
	등) ① 시・도지사선거(보궐선
	거등을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명을 교육감후보
	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지
	명한 사람(이하 "교육감후보자"
	라 한다)에 관한 제4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교육감후보
	자 지명서 및 본인승낙서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교육감후보자로
	지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과
	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

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의 제출, 전과기록의 조회, 전과기록의 회보 등에 대 하여는 제49조제10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④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되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에 관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는 제1항에 따른 지명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후보자가 사퇴·사망한 경우에는 교육감후보자 지명을 변경할수 있으며, 새로운 교육감후보

제52조(등록무효) ① ~ ④ (생략) <신 설>

- 자의 지명절차는 제1항에서부 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 ① 교육감후보자지명에 관한 각종 서류의 서식과 제출·회 보받은 서류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2조(등록무효) ① ~ ④ (현행 과 같음)
 - ⑤ 후보자등록 후에 시·도지 사선거의 후보자가 지명한 교 육감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때에는 그 시·도지사선거 의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 다.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교육감후
 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
 - 2.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않은 것이 발견된 때
 - 3.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 록한 것이 발견된 때

~ ⑤ (생 략) <신 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5)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후 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제49조제1항에서 준 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의 보궐선거 등의 경우와 교육감후보자가 사퇴 · 사망하 여 새로운 교육감후보자로 지 명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 을 가지고 교육감후보자로 지 명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4條(候補者辭退의 申告) (생 략)

<신 설>

第54條(候補者辭退의 신고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교육감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 도지사선거의 후보자를 통하여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 고하여야 한다.

第55條(候補者登錄 등에 관한 公 第55條(候補者登錄 등에 관한 公

告) <u>候補者가</u> 登錄·辭退·死 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 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 會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 여야 하며,下級選擧管理委員會 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선거벽보) ① 選擧運動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候補者 의 寫眞(候補者만의 寫眞을 말 한다) · 姓名 · 記號(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 한다. 이하 같다) · 政黨推薦候 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 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 • 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 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外 國의 教育課程을 履修한 學歷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 우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경우 에는 卒業 또는 修了당시의 학 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 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

告) 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
<u>7</u> }
제64조(선거벽보) ①

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 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 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 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 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 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 · 政見 및 所 屬政黨의 政綱・정책 ユ 밖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 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 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 區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 단을,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 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 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 여 洞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 에 1매, 邑에 있어서는 인구 25 0명에 1매, 面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比率을 한도로 작성ㆍ첩부한다. 다만, 인구밀 집상태 및 貼付場所등을 감안

비례대표자
<u>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u> ,
<u>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해</u>
당 교육감후보자의 성명ㆍ경력
<u> </u>
,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 천명에 1매의 比率까지 조정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 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 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 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ㆍ기 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 · 학위 · 상벌(이하 "경력등"이 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 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 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 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에 따른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 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 나 종전의 배열방법 · 색상 · 규 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u>.</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u> 경력·학력
· 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
라 한다) 또는 교육감후보자의
<u>성명·경력이</u>

⑥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u>경력등에</u>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 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 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 ⑫ (생 략)

제6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

6
경력이나 교육감후보자의 성
<u>명·경력에</u>
 ⑦ ~ ⑫ (현행과 같음)
•
· ⑦ ~ ⑫ (현행과 같음)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 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 야 한다.

② ~ ⑭ (생 략)

-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 第 選無效 등) ①・②(생 략)
 - ③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한다.
 - 1. (생략)
 - 2. 當選人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 3. (생략)

<u>하며, 시·도지사선거에 있</u>
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
육감후보자의 사진·성명과 제8
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게재하
여야 한다.
② ~ ⑭ (현행과 같음)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
選無效 등) ①・② (현행과 같
<u>o</u>
③
,
1. (현행과 같음)
2
<u>제2항 • 제3항 • 제5항</u>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제219조(선거소청) ① (생 략)

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 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 선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 는 政黨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 決定日부터 14日 이내에 제52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제190조(지역 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 ·공고·통지) 내지 第191條(地 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 는 때에는 당해 選舉區選舉管 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訴請 人으로 하여 지역구시 · 도의원 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 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自治 區・市・郡議員選舉 및 自治區 ・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 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비 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지역구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9조(선거소청) ① (현행과 같
<u> </u>
②
제52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
항
<u></u>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第223條(當選訴訟) ① 大統領選舉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당 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 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 日부터 30日이내에 제52조제1 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 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 人을,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第2 項.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 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 項 내지 第4項, 第189條(比例代 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 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 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

	⑦ (현행		<u>o</u>)
			- <u>제52조제1</u>
<u>항 • 제</u>	<u> 3항 • 제5</u>	<u>항</u>	

統領選擧에 있어서는 그 當選 人을 決定한 中央選擧管理委員 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 國 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 를 제기할 수 있다.